

의안번호	제 499 호
의결 연월일	. . . (제 회)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발의자	박형용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0년 8월 26일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박형용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99
----------	-----

발의연월일 : 2020년 8월 26일  
발 의 자 : 박형용, 이숙애, 이상욱  
이의영, 장선배, 허창원  
육미선

**1. 제안이유**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에 따라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청북도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설치, 기능 및 구성 (안 제2조, 제3조, 제4조)
- 나.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실적 보고 (안 제5조)
- 다.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에 대한 지도·감독 (안 제7조)
- 라.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 (안 제9조)
- 마.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위탁 운영 (안 제10조)

**3. 의안전문 : 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 나. 조례안예고 : 충청북도의회 공고 제2020-64호
- 다. 협의 : 보건정책과
- 라. 비용추계 : 붙임

##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청북도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기술적 지원 및 의료 자원 간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3조(기능)**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2. 공공보건의료기관 간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 지원
3. 의료인력 DB구축을 통한 의료취약지 인력 지원
4.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종사자 교육·훈련
5. 공공보건의료 자원 및 실적 통계 관리 및 모니터링
6. 공공의료기관 운영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기술 지원
7. 공공보건의료기관 평가 지원
8.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보건의료 사업 발굴
9.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교육 프로그램, 연구조사 등을 통한 도민 참여 기반 구축
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등)** ① 지원단은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이하 “지원단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6명 이상의 연구원과 행정요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장은 지원단을 대표하고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지원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5조(사업계획 승인 및 실적 보고)** ① 지원단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해당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지원단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당연도 사업 추진 실적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 및 보고 외에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승인을 받게 할 수 있다.

**제6조(자료협조 요청 등)** ① 지원단장은 공공보건의료 정책 수립·시행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다른 법령에서 정보의 제공을 제한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지원단장은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④ 지원단장은 제공받은 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지원단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지원단장은 도지사의 요구에 따라 자료 등을 제출하고 지도·감독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제8조(회계의 분리)** 지원단장은 지원단의 사업 및 운영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으로 분리하여 관리한다.

**제9조(예산의 지원)** ① 도지사는 지원단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및 절차 등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위탁 운영)** ① 도지사는 지원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공의료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단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위탁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발췌

###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보건의료”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공공보건의료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가. 보건의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 및 분야에 대한 의료 공급에 관한 사업
  - 나. 보건의료 보장이 취약한 계층에 대한 의료 공급에 관한 사업
  - 다. 발생 규모, 심각성 등의 사유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이 필요한 감염병과 비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재난으로 인한 환자의 진료 등 관리, 건강 증진, 보건교육에 관한 사업
  - 라. 그 밖에 국가가 관리할 필요가 있는 보건의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3. “공공보건의료기관”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가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4.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 가. 공공보건의료기관
  - 나. 제13조에 따른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 다. 제14조에 따른 공공전문진료센터
  - 라. 제16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

제22조(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설치·운영) ① 시·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운영을 공공보건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설치, 운영 및 운영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공단체의 범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말한다.

1.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2.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3.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
4.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6.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8.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9.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10.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11. 「암관리법」 제27조에 따른 국립암센터
12.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운영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대한 지원
  2. 관할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과 시행에 대한 지원 및 공공보건의료기관과의 협력 사업 수행
  3.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운영에 대한 기술 지원
  4. 그 밖에 관할 지역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사·연구 등 필요한 사항
-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조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 1. 사업개요

- 충북 공공보건의료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공보건의 지원단' 설립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필수 의료서비스 적정 공급을 도모하고 균형잡힌 공공보건의료 제공

## 2. 비용 발생 요인

-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에 따른 인건비, 사업비, 관리비 등

## 3. 관련 조문

-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예산의 지원)

## 4. 비용 추계결과

### 가. 추계의 전제

-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을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며, 추계기간은 2021년부터 2025까지 5년으로 함
  -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등은 민간위탁 사무 범위 내에서 재정 지원함
- ※ '20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운영지원 사업안내 기준, 작성

### 나. 추계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합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합 계	1,5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인건비	1,045,560	209,112	209,112	209,112	209,112	209,112
사업비	2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운영비	204,440	40,888	40,888	40,888	40,888	40,888

### 다. 재원조달방안

- 국고보조금(보건복지부) 및 자체재원 매칭사업으로 추진

## 5. 연도별 비용추계서 : 붙임

##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계	
<b>세 입</b>	<b>150,000</b>	<b>150,000</b>	<b>150,000</b>	<b>150,000</b>	<b>150,000</b>	<b>750,000</b>	
국 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지원)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750,000	
<b>세 출</b>	<b>300,000</b>	<b>300,000</b>	<b>300,000</b>	<b>300,000</b>	<b>300,000</b>	<b>1,500,000</b>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지원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500,000	
	인건비	209,112	209,112	209,112	209,112	209,112	1,045,560
	사업비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250,000
	운영비	40,888	40,888	40,888	40,888	40,888	204,440
재원 조달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500,000	
의존 재원	소 계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750,000
	보조금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750,000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750,000
	지방세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750,0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특별회계							
시.군비							
기 타 (민간 자부담)							